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572호 2022. 6. 8.(수요일)

훈 령

- 하동군 훈령 제381호 하동군 공공부문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관리규정 3
- 하동군 훈령 제382호 하동군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 규정 폐지규정 . 6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22-104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7
- 하동군 고시 제2022-105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고시(화개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 10
- 하동군 고시 제2022-107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고시(박순*) 10
- 하동군 고시 제2022-108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고시(신중*) 11
- 하동군 고시 제2022-109호 하천점용 허가고시(김상*) 11

입 법 예 고

- 하동군 공고 제2022-785호 하동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12

일 반 공 고

- 하동군 공고 제2022-770호 방치선박 등 제거 재공고 15

회 람									
--------	--	--	--	--	--	--	--	--	--

「하동군 공공부문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관리규정」을 발령한다.

2022년 6월 8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훈령 제 381 호

하동군 공공부문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하동군 청소노동자(공무직 및 파견용역 노동자 등)의 휴게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휴게시설”이라 함은 노동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옥내휴게실 뿐 아니라 옥외에 설치한 그늘막 등 휴게공간도 포함)을 말한다.

제3조(이용시간) 청소노동자는 근무 전·후와 근무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갖으며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4조(이용원칙) 청소노동자는 휴게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가급적 직원 휴게실과 구분하여 설치하되, 구분하여 설치가 어려울 경우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제5조(위치) ① 휴게시설은 이동하기 편리하도록 작업공간과 인접한 곳에, 유해물질 취급 장소와는 격리된 곳에 설치한다.

② 옥상 및 지하는 옥내공기·악취 등 환경이 열악하므로 가급적 지상에 설치하되, 제7조 및 제8조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으며, 공기청정기 등 환경개선을 위한 비품을 설치한다.

③ 관리해야 할 공간이 큰 경우 거점별로 설치하며, 고객 휴게시설과 별도로 설치한다.

제6조(규모) ① 휴게시설은 노동자 수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적정한 면적과 개수를 확보한다.

② 1명당 1.5㎡ 이상, 최소면적은 의자와 탁자를 포함하여 6㎡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③ 다만, 대규모 사업장에서 일시에 휴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동시 사용자 수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의 적정한 면적과 숫자 등을 노사 간 협의에 의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7조(온·습도 환경) ① 쾌적한 옥내 환경을 위한 냉난방 시설 및 환기시설을 마련한다.

② 휴게시설은 적정온도를 유지(여름 20~28℃, 겨울 18~22℃)하며, 습도는 50~55% 유지한다.

③ 바닥을 좌식으로 설치할 경우 난방시설을 설치(예 : 전기장판, 온돌 등)한다.

제8조(조명 및 소음 환경) ① 조명은 심리적,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한다.

② 조명은 자연채광이 될 수 있도록 하고, 100~200Lux 내외를 권장한다.

③ 휴게공간 내 소음 허용기준으로 50dB이하 유지를 권장한다.

제9조(마감재) ① 휴게시설은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내화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며, 내진성, 내마모성, 내수성, 내방충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한다.

② 쉽게 더럽혀지지 않고, 청소가 쉽고, 유지보수가 편리한 재료를 사용한다.

제10조(가구 및 비품) ① 휴게시설은 소파, 등받이가 있는 의자, 탁자 등을 설치하며, 야간 작업자를 위한 침대, 침구류 등을 비치한다.

② 물이나 간단한 차, 화장지, 수건 등을 비치하며, 생활가전 제품(냉장고, 냉온풍기, 정온수기 등)을 설치한다. 다만 냉장고, 정온수기와 같은 생활가전 제품은 휴게시설 인접 공유 공간(복도, 주방 등)에 설치되어 있어 이용의 불편함이 없을 경우 휴게시설 내에 추가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업무특성상 필요한 경우 개인사물함과 신발장을 구비한다.

제11조(관리) ① 휴게시설은 업무특성상 환복 등이 필요한 경우 남녀로 구분하여 설치하고, 기자재, 청소도구, 수납공간은 별도로 확보한다.

②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이나 세탁을 실시한다.

③ 휴게시설 담당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담당자는 매월 별표의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미비할 경우 개선한다.

④ 정기적으로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휴게시설 이용의 불편사항을 파악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한다.

제12조(기타) 이외에 필요에 따라 노동자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1조 관련)

하동군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주요 체크리스트

구분	점검항목	그렇다	아니다	
이용원칙	- 환경미화원, 방호원(경비원) 등은 직원휴게실과 구분 설치			
	- 자유롭게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조성			
	- 옥외작업의 경우 여름철 그늘막 제공			
위치	- 이동하기 편리하도록 작업공정에서 인접한 곳에 위치			
	- 작업공정·위험반경으로부터 분리된 곳에 위치			
	- 관리해야 할 공간이 큰 경우 거점별로 설치			
	- 유해물질 취급 장소와 격리			
	- 지상에 위치			
규모	- 고객 휴게시설과 별도로 직원 휴게시설 설치			
	- 노동자 수를 고려하여 적정 규모 공간 확보			
	- 최소 전체 면적은 6㎡ 확보			
	- 침대나 가구 등을 설치 시 이를 고려한 면적 확보			
환경	- 수급인의 경우는 도급인 기업에서 장소를 제공하거나, 도급인의 휴게시설 함께 사용			
	온습도	- 옥내 적정온도 유지 (권고수준-여름철 : 20~28℃, 겨울철 : 18~22℃)		
		- 옥내 적정습도 유지(권고수준-50~55%)		
		- 냉난방 시설 설치		
환기설비 활용하여 쾌적한 공기질 확보				
조명	- 휴식에 방해되지 않는 은은한 조명(권고수준-100~200 Lux)			
소음	- 휴식에 방해되지 않는 정도의 소음(권고수준-50dB 이하)			
	- 작업장 내의 소음이 휴게시설로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			
마감재	-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내화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			
	- 내진성, 내마모성, 내수성, 내방충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			
	- 쉽게 더럽혀지지 않으며, 청소하기 쉬운 재료 사용			
가구 및 비품	- 소파, 등받이가 있는 의자, 탁자 등을 설치			
	- 야간 작업자를 위한 침대, 침구류, 기타 필요용품 비치			
	- 생활가전제품(냉장고, 냉온풍기, 정수기 등)			
	- 물이나 간단한 차, 화장지, 타올 등 비치			
	- 개인사물함과 신발장 구비			
관리	- 남녀로 구분하여 설치			
	- 기자재, 청소도구, 수납공간은 별도로 확보			
	- 휴게시설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 부착			
	- 휴게시설 관리 규정 마련			
	- 담당자 지정하고 매월 관리			
	-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이나 세탁 실시			
- 자유롭게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조성				

「하동군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 규정 폐지규정」을 발령한다.

2022년 6월 8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훈령 제 382 호

하동군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 규정 폐지규정

하동군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 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고시 제2022-104호

도로명주소 부여 · 변경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5. 27.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191-1 외 19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20건)				

○ 도로명주소 변경 :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공설운동장로 229-4외 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4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086)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2. 5. 27.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이동사유	도로명주소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91-1	경상남도하동군하동읍 군청로24-29	—	20220527	20070618	하동군을 상징하고 대표적인 공공기관인 군청앞을 지 나가는 도로로 공공시설명 적용 도로명부여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48-3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35	—	20220527	20070618	하동군을 상징하고 대표적인 공공기관인 군청앞을 지 나가는 도로로 공공시설명 적용 도로명부여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솔상리 산40-5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달구지길 74-12	—	20220527	20070618	옛지명을 도로명에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관곡리 284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상고개로 570-21	—	20220527	20070618	양보면 박달리에서 진교면 월운리 경계에 있는 재이 름에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관곡리 227-3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상고개로 570-19	—	20220527	20070618	양보면 박달리에서 진교면 월운리 경계에 있는 재이 름에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관리 39-3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적량로 90-1	—	20220527	20090302	적량면의 중앙을 통과하는 간선도로로 면이름에서 도 로명 부여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박달리 591, 590-5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원박길 15-6	—	20220527	20080402	원박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상이리 1124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1688	—	20220527	20090302	횡천-청암간 도로로 주 이용도로가 청학동으로 가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125-3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범왕길 22	—	20220527	20070618	수로왕이 칠왕자를 만나려고 왔다가 머문곳으로 범왕 시를 창건하였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장암리 156-3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우성길 108-48	—	20220527	20080402	우성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정서리 산94-20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정서길 156	—	20220527	20070618	염등만수 정자 숲의 서쪽 마을에서 유래된 정서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서리 산254-1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도장골길 15-44	—	20220527	20070618	도장골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매계리 344-1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노전길 103	—	20220527	20070618	갈대가 많이 자라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신성리 671-2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성두길 73-20	—	20220527	20070618	마을 앞들에 고인돌이 복두칠성 별자리처럼 놓여져 있었다는 지형적 조건에 유래된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신성리 671-5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성두길 73-18	—	20220527	20070618	마을 앞들에 고인돌이 복두칠성 별자리처럼 놓여져 있었다는 지형적 조건에 유래된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대치리 988, 989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한재길 172-15	—	20220527	20090302	북쪽에 있는 큰 고개라고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탑리 129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백혜길 77-6	—	20220527	20090302	마을명 부여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107-5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1809	—	20220527	20090302	황천-청암간 도로로 주 이용도로가 청학동으로 가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화정리 산328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방화길 229	—	20220527	20090302	뒷산의 생김새가 뒤덜방아와 같이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흥룡리 638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매화골먹점길 37	—	20220527	20070618	매실이 많이 나는 마을특성에 먹점이라는 자연마을 이름 반영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이동사유	도로명주소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분할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공설운동장로 229-4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공설운동장로 229-4	—	20110729	20070618	공설운동장 앞을 지나가는 도로로 공공시설명을 반영	
건물번호분할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공설운동장로 229-4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공설운동장로 229-6	—	20220527	20070618	공설운동장 앞을 지나가는 도로로 공공시설명을 반영	
건물번호분할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상성길 20-18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상성길 20-18	—	20110729	20080402	상성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분할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상성길 20-18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상성길 20-20	—	20220527	20080402	상성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하동군 제2022-105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 5. 31.

하 동 군 수

- 1. 허가(승인)번호 : 2022-32호
- 2. 허가연월일 : 2022. 06. 2.
- 3. 점·사용의 목적 : 검두마을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 4. 점·사용의 장소 및 면적 :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1167번지(인접: 화개면 부춘리 839번지), 15㎡
- 5. 점·사용의 기간 : 2022. 06. 02. ~ 2026. 06. 01.
- 6.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경상남도 하동군 쌍계로 71-9, 화개면사무소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하동군 제2022-107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 6. 02.

하 동 군 수

- 1. 허가(승인)번호 : 2022-33호
- 2. 허가연월일 : 2022. 06. 2.
- 3. 점·사용의 목적 : 농지진입로 사용
- 4. 점·사용의 장소 및 면적 : 하동군 화개면 삼신리 978번지(인접: 화개면 삼신리 175번지), 14㎡
- 5. 점·사용의 기간 : 2022. 06. 02. ~ 2026. 06. 01.
- 6.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금오길***, 박*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하동군 제2022-108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 6. 02.

하 동 군 수

1. 허가(승인)번호 : 2022-34,35호
2. 허가연월일 : 2022. 06. 2.
3. 점·사용의 목적 : 진출입로 개설
4. 점·사용의 장소 및 면적 : 하동군 적량면 관리 955번지, 15㎡
하동군 적량면 관리 산30-1(인접: 적량면 관리 58번지), 25㎡
5. 점·사용의 기간 : 2022. 06. 02. ~ 2026. 06. 01.
6.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부산광역시 사하구 윤공단로62번길 **, 신*남

하천 점용 허가 고시

하동군 제2022 - 109호

「하천법」 제33조 제7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점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 6. 2.

하 동 군 수

1. 허가번호 : 2022-36호
2. 하천의 명칭 : 주교천
2. 허가연월일 : 2022.06.2.
3. 점용자 : 하동군 금남면 덕천리 376, 김상*
4. 점용의 목적 : 나무적재
5. 점용위치 : 고전면 전도리 1296-1 (인접: 전도리 647-4)
6. 점용면적 : 660㎡
7. 점용허가 기간 : 2022. 6. 2. ~ 2023. 12. 31.

하동군 공고 제2022-785호

하동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월 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2. 제안 이유
 - 자연휴양림의 보완 사업 완료에 따른 추가된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 사용료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3. 주요내용
 - 가.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별표 1)
 - 시설 사용료 추가 및 변경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2년 월 일까지 하동군(참조 : 산림녹지과, 전화880-2487, FAX 880-2460, e-mail sn1214@korea.kr)에게 **【별지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하동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3. 시설사용료 기준

구분	기준	이용기간	요금(원)		비 고	
			성수기	비수기		
숙박시설	숲속의 집 (단독형)	10인실	1동/1일	130,000	100,000	
		6인실		110,000	80,000	
		4인실		100,000	70,000	
	트리하우스 (단독형)	2인실		60,000	40,000	
		3인실		100,000	70,000	
		4인실		110,000	80,000	
	숲속휴양관 (콘도형)	6인실	1실/1일	100,000	70,000	
		8인실		110,000	80,000	
	글램핑장	4인실	1동/1일	100,000	70,000	
	숲속야영장	4인	1면/1일	30,000	20,000	
트리하우스 (야영장)	4인	1면/1일	50,000	40,000		
세미나실	1실(405㎡)	4시간	300,000	200,000		
		8시간(1일)	400,000	300,000		

가. 숙박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사용당일 15:00부터 다음날 12:00까지로 하며, 시간 초과 시 1일 사용료를 추정할 수 있다.

나. 숙박시설의 1일 미만 사용 시에는 1일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 숙박시설 인원초과 시 1명당 10,000원을 추정한다.

라. 세미나실 1일 사용시간은 사용당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공고 제2022-770호

방치선박 제거 공고

우리 군 공유수면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된 어업폐기물이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해양환경 및 수질오염을 유발시키고 있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유자가 자진제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이 우리 군에서 직권으로 어업폐기물을 제거하고자 하오니,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문의사항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022년 6월 3일까지 하동군 해양수산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18일

하 동 군 수(인)

1. 공 고 기 간 : 2022. 5. 18. ~ 2022. 6. 3.(16일간)
2. 공 고 방 법 : 하동군 홈페이지
3. 제 거 대 상 : 방치선 1척

관리번호	구분	종류	물질중량	방치장소	비고
제2022-770호	방치선박	폐어선	약 2톤	- 하동군 가덕리 1114, 명덕항	

4.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 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공고기간 경과 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 나. 아울러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 또는 수질오염을 발생시킨 어업폐기물 방치 행위자에 대하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제거명령 불이행시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다. 해당 어업폐기물의 이해관계인(압류 및 저당권 설정자 등)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및 폐기 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사항은 하동군 해양수산과(☎055-880-2445)로 연락바랍니다.

방치선박 제거공고

① 발 견 장 소	경남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 1114(명덕항 근처)			
폐뗏목, 어선제원	② 구분	폐어선	③ 재질	FRP
	④ 주요치수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 1114(명덕항 근처), 폐어선(3m×1.5m)		
⑤ 관리청		하동군청 해양수산과	⑥ 관리번호	제2022-770호
⑦ 제거 예정일자		2022년 6월 3일 이후(공고 종료 이후)		
⑧ 제거 방법		직권 제거		
⑨ 공매장소 및 일시		해당없음		
⑩ 입찰보증금		해당없음		



위 어업폐기물은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수질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2년 6월 3일까지 하동군청 해양수산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18일

하 동 군 수(인)

(담당자 : 김수영, 전화번호 : 055-880-2445)